재단법인 송악읍개발위원회

법 인 정 관

【제 정 : 2015. 8. 24】

【1차 개정 : 2018. 4. 16】

【2차 개정 : 2020. 2. 10】

【3차 개정 : 2020. 4. 06】

재단법인 송악읍 개발위원회

재단법인 송악읍개발위원회 정관

【제　　정 : 2015. 8. 24】
【1차 개정 : 2018. 4. 16】
【2차 개정 : 2020. 2. 10】
【3차 개정 : 2020. 4. 06】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 법인은 “재단법인 송악읍개발위원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칭한다.

제 2조 (사무소와 분사무소)

법인의 사무소를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반촌로 59 에 둔다.

제 3조 (목적)

법인은 송악읍민 총화와 향토애를 바탕으로 균형 있는 지역개발과 주민복리증진 및 정신문화 창달 등 읍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읍정 발전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사업) 법인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1. 송악읍 주민화합과 애향심 고취를 위한 사업.
2. 송악읍 지역개발 촉진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3. 송악읍 지역 현안과제에 관한 연구.
4. 송악읍 발전에 관한 주민의 의견수렴 및 건의추진
5. 송악읍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단체의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관한 사업.
6. 기타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공익 활동 및 이에 필요한 사업.

제 5조 (법인 이익의 수혜자)

이 법인의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6조 (회원의 자격) (2020.4.06 개정)

법인의 회원은 본 법인의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송악읍 관내 단체장 중 아래의 직책에 현임 중인 자는 당연직 회원이 된다.

○송악읍 개발위원장, ○송악읍 이장단 협의회장, ○송악농협 조합장, ○송악읍 주민자치위원장, ○송악읍 체육회장, ○새마을지도자 송악읍 협의회장, ○새마을지도자 송악읍 부녀회장, ○각 리 이장, ○남.여 송악의용소방대장, ○의용소방대 한진지대장, ○송악읍 바르게살기위원회 회장, ○송악읍 농촌지도자 회장, ○송악읍 농업경영인 회장, ○송악읍 생활개선회 회장, ○송악읍 농가주부모임 대표, ○쌀전업농회장, ○송악 농민회장, ○어촌계장(한진1리, 고대1리), ○엄마순찰대장, ○송악읍 청년연합회장, ○송악읍 적십자봉사회 회장, ○송악읍(복운3리, 중흥리) 자율방범대장, ○송악읍 생활안전협의회장, ○한국자유총연맹 송악분회장, ○송악읍 재향군인회장

2. 전1호에 해당하지 않은 송악읍 관내 인사 중 이사장이 본 법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인정하여 추천하는 5인 이내의 자
3. 전1호에 해당하지 않은 송악읍 관내 단체장 중 이사회에서 회원자격 부여가 승인된 자
4. 전1호 및 3호에 의한 회원이 관련 단체장 직에서 사임, 해임, 임기만료된 경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 7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면 특정개인, 정당, 종교 및 사회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지 못한다.

제 8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제 9조 (회비)

①정회원은 총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②이미 납부 한 회비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 (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

회원은 위원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 위원회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가 현저하여 이사회에서 제명 결의된 자.
2. 1년간 회의에 무단 불참한 회원

3. 기타 회원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이사회에서 제명 결의된 자.

제11조 (제명)

①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훼손한 때 또는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②회원의 제명에 관한 의결은 회원 4분의 3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12조 (회원의 재입회)

정관 제10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탈퇴 또는 제명된 자는 탈퇴 또는 제명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재입회할 수 없다.

제13조 (탈퇴 시 회비 등 반납)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기 납부한 각종회비, 부과금 등의 반환 및 기타 재산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 3 장 자산 및 회계

제14조 (출자방법) 본회의 출자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출연금품
3. 찬조금
4. 기타 수입금

제15조 (자산의 구성) 법인의 자산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한 것으로 구성한다.

1. 별지 목록 기재의 재산
2. 회비
3.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4. 사업에 따른 수입
5. 기부금
6. 기타 수입

제16조 (자산의 종류)

①법인의 자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2종으로 한다.

②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 것으로 하되 이는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일부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

할 수 있다.

1. 별지 목록 기재의 재산 중 기본재산으로 기재된 재산
2.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지정하여 출연된 재산
3.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결의한 재산

③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의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17조 (경비지출) 법인의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지출한다.

제18조 (회원의 회비)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9조 (자산의 관리)

법인의 자산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 관리 방법에 따라 이사장이 관리한다.

제20조 (잉여금의 처분)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시킨다.

제21조 (예산의 의결, 결산의 승인)

①법인의 매연도 세입세출예산은 연도 개시 전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세입세출결산은 연도 종료 후 1월 내에 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과 함께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특별회계)

①법인은 수익사업을 행하거나 또는 기타 필요한 때에는 이 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②전항의 특별회계는 전조의 세입세출예산에 계정해야 한다.

제23조 (수익 등의 사용)

전조의 특별회계로부터 생긴 수익 또는 잉여금은 이를 모두 기본재산이나 보통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제24조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제25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하여야 한다.

제26조 (임원의 보수)

사업 운영을 전담하는 이사를 제외한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4 장 임원 및 직원

제27조 (임원의 수) 임원은 본 법인의 회원 중에서 선출기관에서 선출된 자로 하며, 인원 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2020.04.06. 개정)

1. 이 사 장 1명
2. 부이사장 2명 이내
3. 이 사 5명 이상 11명 이내(이사장 및 부이사장 포함)
4. 감 사 2명 이내

제28조 (임원의 자격) 임원은 본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정회원으로 한다.

제29조 (임원의 선임) (2020.4.06. 개정)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선출 규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②임원 선출시 송악읍 관내에 주소를 두고 회원자격이 있는 직전 이사장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한다.

③임원 선출이 있을 때에는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단체장직 임기(이장직 포함) 만료시에는 개발위원회 임원직도 사임한다.

제30조 (임원의 선임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임원 선임을 할 수 없다.

1.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하였을 때
2. 감사 선임 시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일 때
3. 이사장 선임 시 법인회원 중에서 3년 미만인 자

제31조 (임원의 직무) 법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이사장은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법인을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여 통상업무를 관할하며 이사장 유고시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는 이사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32조 (임원의 임기) 법인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이사장포함)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된 때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3개월 미만이면 보선하지 아니한다.

제33조 (임기만료 등의 경우)

임원은 사임 또는 임기 만료 된 때에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34조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한 한정치산자
3. 파산된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5. 임원의 취임 승인이 취소 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공직선거법 제87조에 의거 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자

②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제35조1 (임원의 해임)

①임원이 법인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법인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5. 민법 및 행정자치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35조2(정치활동 금지)

법인은 법인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공직선거법」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제 5 장 회의 (총회와 이사회)

제36조 (회의의 종류)

①회의는 총회와 이사회의 2종으로 하되 총회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개최하고 임원의 임기 만료시에는 12월중으로 개최한다. 임시총회와 이사회는 수시 필요한 때에 이를 개최한다.

제37조 (총회의 소집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이사회가 소집을 결의한 경우
3. 재적 회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②총회는 회의 1주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여 이를 소집한다.

제38조 (총회의의 의장) 이사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39조 (개회의 정족수) 회의는 회원 또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이 없으면 개회하지 못한다.

제40조 (총회 의결정족수)

①총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의결한다.

②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 (총회에 부의할 사항) 다음에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총회에 부의한다.

1. 사업계획의 승인
2.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정관의 개정 및 변경 및 법인의 해산
4.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기채, 담보, 대여, 취득 등의 승인
5. 임원의 선출 및 해임

6. 감사보고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주요사항 및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제42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제43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이사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정기이사회는 년 2회 내지 3회 개최한다.

③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⑤이사장은 재적인원 3분의1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4조 (이사회의 부의할 사항)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은 이사회에 부의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
3.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의안
4. 정관변경 및 법인 해산에 관한 의안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기채, 담보, 대여, 취득 등 재산관리에 관한 의안
7. 기타 법인운영 및 회무집행에 관하여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제45조 (이사회 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위임장으로 다른 이사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46조 (의사록)

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회원 또는 이사의 현재 수
3. 출석한 회원 또는 이사의 수(표결권을 위임한 회원 또는 이사 포함)

4. 의결사항
5. 의사의 경과, 요령 및 발언자의 발언요지

제47조 (의결제척) 대표자 또는 이사의 의결권 없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법인과 대표자 또는 이사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대표자 또는 이사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6 장 사무국

제48조1(사무국)

①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는 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총회의 의결로 임명한다.

③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 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을 둔다.

제48조2(홈페이지)

①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②법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예산 결산내역, 감사내역,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을 공개하며 필요한 경우, 각종 회의의 소집 및 결과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제 7 장 보 칙

제49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은 총회에서 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50조 (업무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3. 해당 사업연도 및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51조 (해산, 잔여재산의 처분)

①법인은 민법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다.

②총회원의 4분의 3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법인을 해산할 수 있다.

③법인의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52조 (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할 때에는 민법 제94조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53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행정자 치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 8 장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따로 정한다.

제 3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 4조 (기본재산 등)

이 법인 설립시의 기본 및 보통재산, 임원 및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별표 1내지 3과 같다.

개정일 : 2020. 04.06.

재단법인 송악읍 개발위원회